

# 대전광역시축구 협회 정관

2016년 3월 27일 제정  
2017년 2월 10일 개정  
2018년 1월 30일 개정  
2018년 7월 16일 개정  
2019년 1월 14일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 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3조에 의거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축구 협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협회는 축구 종목의 대표성을 가지고 명칭 (사) 대전광역시 축구 협회 (이하 “본 협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Daejeon Football Association” (약칭 “DF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 협회는 축구 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대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협회는 본 협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각 구 축구협회, 여자축구 연맹, 풋살연맹 등의 회원을 둘 수 있다.

③ 본 협회는 축구 종목을 소관 하는 대한 축구 협회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대전광역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본 협회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구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축구 경기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및 결정
  3. 자치구 축구 단체 및 여자연맹, 풋살연맹의 지원 및 관리·감독
  4. 축구에 관한 국제 또는 전국 대회의 개최 및 참가
  5. 축구 대회의 개최 및 주관
  6. 축구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7. 축구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및 안전교육 사업
  8. 축구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통계 및 홍보
  9. 축구 단체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축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1. 체육 활성화 및 축구 단체의 필요한 제원 조달을 위한 각종 사업(임원회비 포함)
- ② 본 협회는 구 축구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축구 보급 및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규모의 사업은 본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본 협회는 대한 축구 협회의 대의원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시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구에 지부(이하 “구 축구협회”라 한다) 및 여자연맹, 풋살연맹 등을 둔다. 이 경우 구 축구협회는 본 협회의 대의원 총회 의결 (협회 승인에서)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여자축구 연맹은 본 협회의 인준 동의를 득하고, 풋살연맹은 한국풋살연맹의 인준 동의를 득한 후 본 협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본 협회에 관한 구 축구협회, 연맹체 등의 권리 및 의무사항은 이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⑥ 구 축구협회, 연맹체 등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 및 임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⑦ 본 협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 대한 체육회의 가맹 회원단체와 (구) 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 연합회가 회원 종목 단체와 그 산하의 전국 규모 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축구 종목의 회원으로 대전광역시 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⑧ 본 협회는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본 협회에 대한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가입 및 탈퇴)** 본 협회 가입 및 탈퇴는 시체육회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 축구협회, 연맹체 등 가입은 본 협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

② 본 협회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협회 이사회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 축구협회, 여자연맹, 풋살연맹 등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본 협회는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시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시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시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의 사업 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협회와 각 구 축구협회, 여자축구연맹, 풋살연맹 등은 가입 및 탈퇴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정기총회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조직, 각종 규정 및 정관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의

무가 있다

③ 본 협회가 제7조제2항의 의무를 해태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는 본 협회에 대하여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시체육회 규약 제10조제4항에 의거 제명할 수 있으며, 본 협회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목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다.

1. 시체육회의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시체육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회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중앙 종목 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 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 불가
6.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의거 부진 단체로 2회 지정 시
7.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회의 직접 육성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중앙 종목 단체의 규정에 의거 체육회로 관리단체 지정 요구가 있을 경우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중 정회원 단체는 총회 개최 시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본 협회, 구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징계)** ① 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협회와 구 축구협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정부기관·대한체육회로부터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시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본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 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체육회를 경유하여 정부기관 및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 관련 비위 또는 직무 태만한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회는 시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본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 조치를 하도록 시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본 협회 강등제명)** ① 본 협회가 제7조제2항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시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시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시체육회 평가 위원회의 정회원 단체 및 준회원 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 부진 단체로 2회 연속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정회원 단체를 준회원 단체로 강등할 수 있으며, 준회원 단체를 인정 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 제3장 대의원 총회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각 구 축구협회의 장
  2. 종목 육성학교장 및 기관장
  3. 풋살연맹의 장
  4. 여자연맹의 장
  5. 본 협회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육성학교장, 육성기관장은 축구 관련 부서 직원).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 협회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대의원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인준사항을 대한축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 ⑥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구 협회 및 연맹체의 설치, 가입 및 제명
  3. 본 협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 이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12조(총회의 소집)** ① 본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3조(의장)** ① 본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2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

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총회의 운영)** 이 정관 외 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과 대한 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 대한 축구 협회의 정관을 준용한다.

##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본 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협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② 본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9. 그 밖에 중요사항

**제18조 2(상임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협회는 총회 의결과 시체육회 승인을 받아 상임 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예산과 사업 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 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상임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본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전·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본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전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전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본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장 임원

**제22조(임원)**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 협회 의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9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본 협회의 임원은 본 협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본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 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회의 회장 선출 기구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다만, 선거인단에 추천되는 사람 및 추천되는 사람은 본 협회의 종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본 협회 규정에 따른 대의원 전원
2. 등록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3~10명
3. 전문 등록 지도자 3명~10명
4. 등록 스포츠클럽 지도교사, 총무(초, 중, 고, 대) 3명~10명
5. 등록 축구동호인 3명~10명

⑤ 본 협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 시에 본 협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본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장 입후보 등록한 입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기탁금은 본 협회에 귀속한다.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본 협회 기탁금의 금액 등 본 협회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별도로 정한 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회원, 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⑧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⑨ 회장의 선출 방법 및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제24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 협회에서 직접 선거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본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 협회의 임·직원은 시체육회의 회장 선거, 본 협회, 구체육회 및 구 축구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시체육회, 본 협회, 구체육회 및 구 축구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본 협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또는 재적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본 협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협회에 회장 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회 및 구 축구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시체육회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집행부 제1차 이사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 ③ 임원 구성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2. 본 협회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시 대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3.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4.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⑧ 본 협회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⑨ 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7조(동일인의 겸직 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회원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 5종, 바이애슬론, 철인 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 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 협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③ 본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로 선임된 자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결위 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⑤ 본 협회의 임원이 본 협회 또는 체육단체(대한 체육회, 시체육회, 대한 축구 협회, 다른 종목 단체 및 구 협회 등을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 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⑥ 본 협회의 임원이 본 협회 또는 체육단체(대한 체육회, 시체육회, 대한 축구 협회, 다른 종목 단체 및 구 협회 등을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의 감사 처분을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⑦ 본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외의 범죄 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⑧ 시 및 구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임원 임기 제한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의 임원은 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임원 심의에 관해서는 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따른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대한 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시체육회, 시 협회, 구체육회, 구 축구협회 또는 대전 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대한체육회, 대한 축구협회, 시체육회, 본 협회, 구체육회, 구 축구협회 또는 대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대한 축구협회, 시체육회, 본 협회, 구체육회, 구 축구협회 또는 대전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 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시체육회, 본 협회, 구체육회, 구 축구협회 또는 대전 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1. 대한 체육회, 대한 축구협회, 시체육회, 본 협회, 구체육회, 구 축구협회 또는 대전 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2.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 협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본 협회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협회 간 거래 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본 협회, 시체육회, 구체육회, 구 축구협회, 대전 장애인 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전광역시 산하 체

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본 협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시체육회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본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시체육회의 스포츠 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시체육회 규약 제34조제2항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때
3. 시 및 구체육회, 구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32조(명예직의 위촉)**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30조 제1항 1호부터 12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구 축구협회 및 여자연맹, 풋살연맹

**제33조(지위 및 명칭)** ① 구 축구협회 및 여자연맹, 풋살연맹은 본 협회의 직속(회원)연맹으로, 각 구 단위 및 연맹별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 축구협회는 구체육회에 가입(풋살연맹은 한국풋살연맹에 가입) 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체육회 소재지(풋살연맹은 본 협회 관할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 축구협회는 각 동에 지회를 둘 수 있다.(풋살연맹은 각 구에 구 연맹을 둘 수 있다)

**제34조(구 축구협회 및 풋살연맹의 총회)** ① 구 축구협회의 대의원은 단위 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풋살연맹은 구 연맹의 장을 포함하여 각 구별 1인으로 구성)

② 구 축구협회 및 풋살연맹은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구 축구협회 및 풋살연맹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5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 체육회(풋살연맹은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구 축구협회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 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 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 분야는 동호인 조직 대표 4인 이하

⑤ 구 축구협회의 장은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구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구 축구협회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3분의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5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 체육회는 제34조 4항에 따른 대의원 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전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6조(총회 소집)** ① 구 축구협회 및 여자연맹, 풋살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② 구 축구협회 및 여자연맹, 풋살연맹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 중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 축구 협회 및 여자연맹, 풋살연맹의 사업 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 구성 불가 시 대체 기관)** ① 구 축구협회 동호인 조직 등록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풋살연맹은 이에 준해서는 본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경우 구 축구협회의 장 1인 이상 및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인 이상을 각각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 인준 등)** ① 구 축구협회 및 풋살연맹의 임원은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 협회 승인을 받아 구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는 1항에 따른 인준 동의 여부를 시체육회와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구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구 체육회가 인준한 구 축구협회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시체육회는 구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 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구 축구협회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 협회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⑥ 여자연맹은 본 협회에 인준을 득하고, 풋살연맹은 한국풋살연맹의 인준 동의를 득한 후 본 협회에 인준 및 가입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정 승인)** ① 구 축구협회는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 및 시 협회 정관에 부합하는 정관(규약)을 제정하여 구체육회와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정관(규약) 개정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 축구협회 및 여자연맹, 풋살연맹은 본 협회에 구 축구협회 및 풋살연맹의 정관(규약) 및 임원 구성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본 협회는 정관(규약) 승인 사항에 대해 시정사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체육회 및 한국풋살연맹에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체육회 및 한국풋살연맹은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축구협회 및 여자연맹, 풋살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본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 결과 업무 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구체육회 및 한국풋살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축구협회(및 풋살연맹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구 축구협회 및 풋살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축구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육회는 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체육회가 30일 이내에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풋살연맹에 대해서는 본 협회가 이에 준하는 요구를 한국풋살연맹에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 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감사 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제8조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구체육회는 시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풋살연맹에 대해서는 본 협회가 이에 준하는 구성을 한국풋살연맹과 협의한다)

**제42조(회원의 자격)** ① 구 축구협회의 단위 팀에 소속회원은 당해년도 대한축구협회 등록을 하고 회비 납부를 유지한 자를 회원으로 인정한다.(공공기관축구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도 포함).

② 회원은 1인 1클럽 등록을 원칙으로 하나 직장 팀 등록은 2중 등록이 가능하다.

③ 각 구 및 시 협회에 승인을 받지 않거나 또는 승인이 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한 회원 또는 팀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

## 제7장 각종 위원회

**제43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 협회의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기구

로 대회위원회, 경기력 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 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1항 이외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적위원 수를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본 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4조(스포츠 공정위원회)** ① 본 협회는 본 협회 및 구 축구협회 등의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 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에 설치하는 제43조 및 제44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6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본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소유 동산 및 부동산
3. 기금



- 4. 운영 재산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본다.
-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재원)** 본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2. 기부금 및 찬조금
- 3. 사업 수입금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8조(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 2. 차기 회계연도 목적 사업비로 이월
- 3.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9조(재산의 관리)** ①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 협회가 재정적, 업무적인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 ② 본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본 협회의 재산 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시체육회, 본 협회, 구체육회, 구 축구 협회의 임직원
- 2. 본 협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 3. 시체육회, 본 협회, 구체육회, 구 축구협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51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결산 대의원 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3조(경영 공시)** ① 본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기타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③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4조(회계 처리)** 본 협회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1장 사무국

**제55조(사무국)** ① 본 협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본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3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처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56조(사무국 규정 등)** 사무국 구성,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 제12장 보칙

**제57조(해산)** ① 본 협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 결의로 해산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을 시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체육회에 귀속하거나 또는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58조(정관변경)** ①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체육회가 본 협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규정 제·개정)** ① 본 협회는 시체육회 운영종목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 협회의 정관·규약(사무국 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규정 승인)** ①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규정 제32조에 따라 시체육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본 협회의 정관을 재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한축구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는 이와 같다.

② 시체육회는 본 협회가 정관의 재·개정에 대하여 대한 축구협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본 협회는 축구 종목의 대회 운영 규정 등 축구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대한 축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정관의 해석)** ① 시체육회 운영종목 운영규정은 본 협회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본 협회 정관(규약)을 시체육회 운영종목 운영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 협회의 정관과 시체육회 운영종목 운영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시체육회 운영종목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 협회가 시체육회의 정관, 시체육회 운영종목 운영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상위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3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시행 전 (구)대전체육회의 축구협회와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축구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시행 당시 (구)대전체육회의 축구협회와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축구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본 협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 규정 제25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 시행 당시 본 협회임원은 이 규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⑥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전체육회의 축구협회와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축구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이 규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회장이 취임한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⑦ 본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는 (구)대전체육회의 축구협회와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축구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전체육회의 축구협회와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축구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임기는 중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구)대전체육회 가맹회원단체로 가입할 당시 이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본 협회경우 그 예외를 인정한다.

⑨ 본 협회의 회장 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 횟수에 관해서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본 협회가 시체육회 회원종목 운영규정에 의거 정관(규약)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본 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시체육회 승인을 얻어 제25조(회장의 선출)에 의거 선출된 회장의 임기도 2020년 12월까지로 한다. 다만, 본 협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체육회에 승인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부칙(2016. 9.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규약)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 2. 10)**

**제1조(조직)** 여자연맹, 풋살연맹을 조직에 포함이 된다.

### **부칙(2018. 1. 30)**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규약)은 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하여 대전광역시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체육회 공문(경기운영팀-824) 회원 종목 단체 운영규정 제 개정 요청으로 정관 개정.

② “생활 축구” 명칭을 대한 축구 협회 명칭 변경에 따라 “동호인 축구” 로 변경.

### **부칙(2019. 1.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규약)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